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1.19.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올리브영 매장 집기에 들어가는 조명제품을 수입해서 집기에 조명 설치 후 완제품으로 집기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인증 면제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대상여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신청합니다.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관련규제 개요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각 부품이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종 완제품(Assembled Product)은 별도의 미국 인증 및 규제 준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안전 및 전자파 규제가 엄격하므로 완제품에 대한 인증(GCC, FCC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품, 조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 가공 또는 제작 과정 없이 "단순 조립"의 과정만 거치는 경우라면 제조국을 한국으로 적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국 확인을 위해서는 수입국(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제조국(원산지국) 규정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FTA 원산지 규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FTA 통합 플랫폼** https://okfta.kita.net/main
- **FTA 콜센터 ☎1380** https://okfta.kita.net/inquiry?mnSn=36
- 상담분야: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 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FTA 교육 등
- 온라인 상담 https://okfta.kita.net/prfsnCnslt?mnSn=19
- FTA 일일방문 컨설팅 https://okfta.kita.net/ftaCnslt/dailyVisit?mnSn=20

▶ **주요 인증 및 규제**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통신 등 전자파를 방출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필수입니다. 전자파 방해가 공중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OSHA에서 지정한 민간 시험소(UL, CSA, TUV 등)의 인증 마크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GCC: 일반 소비재(12세 이하 어린이 제품 제외)는

일반인증서(GCC,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작성해야 합니다.

▶ 조립 완제품 인증 절차 (부품 활용 시)

- 부품 인증 확인: 사용된 부품(예: 파워서플라이, 모듈)이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UL/FCC 인증 부품인지 확인합니다.
- 완제품 테스트: 부품이 인증을 받았더라도, 조립된 상태에서 전체 시스템의 전자파 방출량과 안전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 FCC 인증 획득: 무선 기기가 포함된 경우, FCC 인증(Certification)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최종 조립 업체 책임: 완제품을 조립한 업체가 최종적인 규정 준수 책임을 집니다.

▶ 수출 시 주의사항

- Country of Origin 마킹: 제품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수입자/책임자 지정: 미국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필요하며, FCC 인증 시 미국 내 책임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제공: 세관 통관 시 GCC/CPC 등 인증서 사본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규제 면제사항

미국은 연방법에서 제정한 강제인증이 많지 않고 대부분 민간임의인증이 통용되는데, 시험용 제품에 대해 임의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품 관련 강제인증 위주로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은 전기안전(NRTL), 전자파(FCC) 관련 인증이 있습니다.

▶ 미국의 규제특성

참고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 리콜/처벌 등의 사후 관리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강제인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강제인증이 아닌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진출 시 해당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수요 및 바이어/수입업자의 요구사항과 경쟁업체의 인증사항을 확인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문의하신 건에 대해 관련된 조항인 FCC 연방규정 CFR 47 (Telecommunication)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15.103 면제 제품(Exempted devices) 항목에서 귀사제품의 인증면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7 CFR 15.103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chapter-I/subchapter-A/part-15/subpart-B/section-15.103

 # "단순 조립" vs. "제조업체"

개별 부품(예: 드라이버, LED 모듈)이 모두 FCC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종 조립 제품은 전체적으로 FCC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품 조합, 외함, 배선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자기 호환성(EMC)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유형의 FCC 승인을 받으셨나요?

-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 대부분의 표준 LED 조명기구(무선 제외)의 경우 SDoC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식 인증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 정식 인증: 조명에 무선 모듈이 있거나 사전 인증된 무선 모듈을 개조한 경우 필수입니다.

▶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부품들의 호환성과 같이 사용된 플라스틱/수지의 안전성 등을 포함하여 완제품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품에 장착된 센서, 배터리 등의 부품뿐 아니라 충전기 어댑터, 리모컨, 케이블 등의 부속품도 사양에 따라 추가로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제품사양과 함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저희 콜센터에서 조사해드리는 내용은 귀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나 인증의 개요, 절차, 유의사항 등의 일반적인 정보로 제품 스펙, 설계상의 법적 조언이나 권고를 드리는 것은 1381콜센터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이는 해당 인증기관 실무자와 귀사 제품의 자세한 스펙을 바탕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안내해드린 인증기관에 귀사제품 사양서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RTL의 경우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노동 안전 위생국) 관할 규제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고용주(employer)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다만, 현대에 많은 제품이 업장, 가정용 용도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NRTL이 강제처럼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제품의 용도를 특정하고 통관시 확실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SGS > Why NRTL Certification Matters for Electrical & Electronic Products in the US
https://www.sgs.com/en/news/2020/07/why-nrtl-certification-matters-for-electrical-electronic-products-in-the-us
: Does My Electrical Product Need NRTL Certification? 확인

▶ 면제 여부

면제 대상제품의 경우, 미국 세관 통관 시 그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품 발송 시 반드시 어떤 목적인지, 눈에 잘 띄도록 크게, 절대 판매 대상이 아닌 샘플임을 확실히 표시하시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포함한 인보이스를 동봉하시면 통관이 조금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세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업체 및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인증 면제 제품임을 소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통관 관련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제 개요

귀사의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의 인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제 개요

1) 일반소비자용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CPSC소비자안전규제를 준수해야합니다.

- 일반제품의 경우 관련 안전규격 시험성적서

기본적으로 CPSC의 소비자제품안전 규제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유통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사후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안전규격을 지키지 않은 불량제품에 대한 규제와 리콜을 담당합니다.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일반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CPSC의 리콜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완제품 및 부품의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라벨링(해당될 경우만)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전기안전(NRTL), 전자파(FCC) 관련 인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선/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경우 FCC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원을 공급하는 AC 케이블뿐 아니라 케이블에 어댑터가 함께 부착되어 있는 일체형의 경우 미국 수출 시 NRTL 및 FCC 인증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eg. 납, 니켈, 수은, 카드뮴 등) 제한 규제는 미연방 차원의 규정이 없고 주별로 다루고 있으니 판매지역의 주별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강제인증이 아닌 민간임의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 UL인증 자체는 민간인증으로 국가 강제인증이 아닙니다만, 제조자는 연방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에 대한 증빙 수단으로 제 3자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게 되는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이나 ETL(Electrical Testing Labs)과 같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인증과 같습니다. 미국은 국가 강제인증뿐 아니라 민간임의인증이 업계에서 통용되어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요구사항과 동종업계의 인증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완제품인증도 필요한가?

부품들의 호환성과 같이 사용된 플라스틱/수지의 안전성 등을 포함하여 완제품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품에 장착된 센서, 배터리 등의 부품뿐 아니라 충전기 어댑터, 리모컨, 케이블 등의 부속품도 사양에 따라 추가로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제품사양과 함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저희 콜센터에서 조사해드리는 내용은 귀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나 인증의 개요, 절차, 유의사항 등의 일반적인 정보로 제품 스펙, 설계상의 법적 조언이나 권고를 드리는 것은 1381콜센터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이는 해당 인증기관 실무자와 귀사 제품의 자세한 스펙을 바탕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안내해드린 인증기관에 귀사제품 사양서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NRTL의 경우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노동 안전 위생국) 관할 규제로 원칙적으로는 제조자(manufacturer)가 아닌 사용자/고용주(employer)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다만, 현대에 많은 제품이 업장, 가정용 용도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서 NRTL이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RTL에 관한 개요는 아래 조사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SGS > Why NRTL Certification Matters for Electrical & Electronic Products in the US
https://www.sgs.com/en/news/2020/07/why-nrtl-certification-matters-for-electrical-electronic-products-in-the-us
: **Does My Electrical Product Need NRTL Certification? 확인**

NRTL 대상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Type of Products Requiring NRTL Approval
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products-requiring-approval

▶ **미국 인증제도의 특성 및 유의사항**

유의할 점은 주별로 별도의 규제를 가지고 있거나 업계 내에서 임의인증이 강제처럼 통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강제규제나 인증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별 규제 및 민간인증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인증의 특성은 임의인증이지만 주 규제나 바이어에 의해 강제처럼 요구되기도 하고 업계 내에서 통용되어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사 제품사양과 판매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강제사항이 없더라도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업계/리테일러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특정인증이 귀사제품에 혹은 해당 판매지역에서 강제사항이 아닐지라도 바이어/리테일러가 요구할 경우 해당인증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자료는 귀사 제품의 자세한 사양 없이 추론한 정보로 귀사제품에 맞춤화된 정보가 아닌 미국 전기전자제품 인증에 대한 일반정보이므로 귀사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증/규격 파악을 위한 기본정보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사후 엄격한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인증/표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통관/관세 관련 업무는 코트라 혹은 일반 컨설팅업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13755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톤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mformation.do
- Trade Pro 디지털 무역상담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주 의 !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1.19.]